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
의안 번호	2165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제안경위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9.17.)
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
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
의 승계 기간을 ‘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’으로 정
하고,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
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
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89조 등).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전단 중 “제5항제3호”를 “제6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5항제2호”를 “제6항제2호”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계한다”를 “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”을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중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
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0조제4항제9호 중 “제89조제5항”을 “제8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32조제1항제4호 중 “제89조제5항”을 “제8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후단 또는 제86조제1항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
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
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
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
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
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
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.

1. (생략)
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
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

② · ③ (생략)

<신 설>

----- 그 처분의 효력이
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농어촌
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
승계한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
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
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
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
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
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
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
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
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
하여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
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제130조(벌칙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8. (생략) 9.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·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. (생략) 제1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. ~ 8. (생략) ② (생략)	<u>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 제130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제89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10. (현행과 같음) 제13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89조제6항-----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